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23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정춘생 · 강경숙 · 김선민
최민희 · 백선희 · 모경중
서왕진 · 이해민 · 김태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각각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으로 하고,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4조의5(종전의 제44조의4)제1항 중 “제44조의3제3항”을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44조의4)제2항 중 “제44조의3제3항”을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의3제3항”을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의4(119구급대의 신생아 발견 사실 통보)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생아의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급활동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알 수 없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 일시 및 장소

2. 신생아의 성별

3. 신생아의 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출생신고 및 신생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6(중전의 제44조의5) 본문 중 “제44조의4”를 “제44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4(119구급대의 신생아 발견 사실 통보)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생아의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급활동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알 수 없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u> <u>1.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그 분만을 지원한 일시 및 장소</u> <u>2. 신생아의 성별</u>

	<u>3. 신생아의 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성명</u> <u>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u> <u>4. 그 밖에 출생신고 및 신생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② 시·읍·면의 장은 제44조	<u>제44조의5(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4제1항-----</u> ----- ----- -----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
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
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
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
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
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
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
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
4제1항-----

-----.

③ -----

-----.

--제44조의3제3항 및 제44조의
4제1항-----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자료제공의 요청) ----

-----제44조의5-----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 ----- ---
---	--